

# 아동학대행위자 분리방안을 위한 탐색적 연구

황옥경<sup>1</sup>, 송미령<sup>2\*</sup>

<sup>1</sup>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sup>2</sup>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 An Exploratory Study on Separation Measures for Child Abuse Offenders

Ock-Kyeung Hwang<sup>1</sup>, Mi Ryoung Song<sup>2\*</sup>

<sup>1</sup>Dept. of Chil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sup>2</sup>Dept. of Medical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요약** 본 연구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 조치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분리조치에 관여하고 있는 사법 분야 및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FGI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간의 분리 필요', '분리 조치 과정에서 문제점',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및 격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등으로 정리하였다. 아동 안전을 위해,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분리 보호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분리조치 과정에서 현장 대응 인력이 갖게 되는 부담감,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및 격리조치에 따른 대비책 미비, 현재 응급조치 및 긴급입시조치의 처벌 규정의 미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을 분리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인식 등이다. 이에 대해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및 격리조치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에 관하여서는 현장조사 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 마련,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및 격리 조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마련, 감호위탁 근거 규정 마련, 아동학대행위자 분리조치가 가능한 양육지원 서비스 강화, 아동학대사건을 바라보는 인식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피해아동의 이익 중심의 아동학대행위자 분리제도 도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아동학대행위자 우선 분리에 대한 인식 제고, 아동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해자 분리하여 격리 방안으로 체포, 입시조치 강화와 감호위탁 근거 규정 마련, 감호위탁시설 및 격리를 위한 일시거주시설 확대, 행위자가해자 분리조치 이후 원가정 양육기능 지원 등이 실효성 있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effective measures to separate and isolate child abusers at home.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ere conducted on eight experts in the field of justice and child welfare who were involved in the separation of victims and child abusers. The FGI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need to separate the victim from the child abuser", "problems in the process of separation measures", and "practical alternatives for the separation and isolation of child abusers". Concerning child safety, it was responded that the separation protection of child abusers and victims should be considered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The burden of on-site response personnel in the process of separating child abusers, lack of countermeasures for separating and isolating child abusers, lack of punishment regulations for emergency and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and the recognition that separating children first were not considered problematic. Regarding practical alternatives to the separation and isolation of child abusers, the need to prepare clear guidelines for the use of on-site investigations,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regulations for separation of child abusers, strengthening child support services, and changing perception of child abuse cases were suggested by respondents. Based on these results, a plan to introduce a separation system for child abuse offenders centered on the interests of victims can be proposed as follows. To raise awareness of the separation of child abusers and provide child safety devices, effective systems should be implemented to separate perpetrators, strengthen temporary measures, and provide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custody and isolation.

**Keywords** : Child Abuser, Separation, Separation Measures, Child Protection, Perpetrator

\*Corresponding Author : Mi Ryoung Song(Sungkyunkwan Univ.)

email: songmr79@skku.edu

Received February 14, 2023

Accepted April 7, 2023

Revised March 13, 2023

Published April 30, 2023

## 1. 서론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아동학대 상황을 인지하고 개입하던 중에 발생하였다. 이는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었고,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와 개입과정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키웠다. 특히 아동보호서비스 개입이 시작된 경우,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적극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런 주장의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했다. 아동복지법 제15조 6항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학대 신고 된 경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즉각분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 2021년 3월 30일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1.1건의 즉각분리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의하면, "일 평균 5.5건의 분리조치가 있었고 이 중 응급조치가 4.4건, 즉각분리가 1.1건이라면서 작년까지는 응급조치 유형만 있었는데 즉각분리 유형이 생기면서 전년보다 30% 정도 늘어났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즉각분리제도가 학대 피해아동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분리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즉각분리제도와 비슷한 효력을 지닌 '응급조치' 등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제도가 있어 실무상 낭용 우려가 있고, 법체계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즉각분리 제도는 가정 외 보호라는 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규정과 관련하여 72시간 응급조치 내지 2개월 임시조치의 명확한 기간을 명시하는 등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있다. 즉각분리 여부 적격성을 파악할 절차와 실무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아동 분리 후 보호 시설의 턱없는 부족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와 아동학대처벌법의 응급조치(72시간 동안 제한적으로 분리), 피해아동보호명령(법원의 조사와 재판을 거쳐 기간을 정해 보호)을 통해 이뤄지는데, 사법심사를 거치지 않는 보호조치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절차들도 사법심사가 실질적으로 제한돼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보호조치는 보호 기간을 피해아동에게 통지하

지 않으며,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보호를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에 따라 시설을 변경하는 등 행정당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어, 피해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저해할 수 있다.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한 분리조치는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와 '보호자의 거부가 완강한 경우' 등의 불명확한 기준을 임의로 설정해두고 그런 경우만을 피해아동보호 명령을 청구해 사법심사를 실시하고 있어, 피해아동의 기본권 침해 여부와 적법 절차 보장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1].

사실상 보호를 위해서 피해아동을 가정으로 분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는 아동에게 학대와 더불어 낮은 생활환경에서 성장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준다. 많은 학대 사례의 경우, 아동에 대한 일방적인 분리보호조치가 피해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피해아동 이익 중심의 조치라고 보기가 어렵다. 학대하지 않은 가족과의 분리, 학교 전학 등으로 인해 아동은 학대 신고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낮은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두려움과 공포가 큰 학대의 기억과 경험에 더해진 가족과의 분리, 시설 등 낮은 환경에서의 적응과제는 학대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오히려 치명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 즉각분리제도 시행이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심리적 돌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아동에 대한 즉각분리 내지는 분리보호의 문제점이 부각하면서 학대행위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아동과 다른 가족구성원의 일상이 평상시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제도의 도입·운영이 필요하다[2].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행위자와 아동을 분리(격리)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 12조 응급조치 조항 중 제2항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 상에서 학대행위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는 것은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상의 주거퇴거 등 격리 조치가 있다. 격리는 일시적인 격리, 위탁 양육 등을 포함하며, 부모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포함한다. 피해아동의 격리는 육체적·정신적 위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하나의 원리로 수렴하는 경향이지만, 부모와의 유대 관계를 중단시킨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3,4] 사법부 판단에 앞서서 행해지는 응급조치의 격리도 그러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피해아동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

힘이 있음에도 학대행위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른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격리 조치에 소극적이 되거나, 격리 조치를 하더라도 가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가정에서 퇴거에 그칠 뿐 학대행위자의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퇴거 등 격리 조치 외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처분이나, 보호처분의 감호 위탁 처분은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아동이다. 아동학대 처분에 있어 피해아동에 대한 원가정 보호 혹은 즉시분리보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아동의 건강과 보호받을 권리를 최상으로 실현할 조건이며,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등이다.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2회 신고를 받고 나서야 아동을 분리하는 역할을 기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대 신고를 받고 공적 서비스 체계가 개입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개별 피해아동의 안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가해자를 즉시 체포하여 격리한다.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가해자를 분리하고 있다[5].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가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킬 때 아동이 심각한 물리적 피해를 입을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녀를 양육할 권리는 근본적이며, 가족구성원을 분리시키는 실질적인 이유(substantial reason)를 가질 경우에만 정부가 개인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박탈할 수 있으며, 개별 주는 아동의 구조와 격리를 위한 사법적 권한에 앞서서 요구되는 대책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6,7]. 그리고 미국은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민사보호명령제도를 모든 주에서 도입하고 있다. 또한, 영국 경찰은 1989년 아동법 제46조 제1항을 근거로, 피해아동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해서도 주거로부터의 퇴거, 접근금지 등 “장소적 배제조치(Exclusion Requirement)”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장소적 배제조치”를 부과할 때 “위반 시 체포한다”라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동 부관이 붙은 상황에서 가해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다면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하다.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법원으로 인치되고, 이때 법원에 의하여 “괴롭힘 금지명령”(Non-Molestation Order)과 같은 민사적 명령(Civil Order)을 처분 받을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민사보호명령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가정 내 폭력피해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가해자 처벌 관점’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유연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체포, 격리 등으로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우선한다.

이제 국내 아동학대 보호조치과정에서 피해자 아동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야 한다. 피해아동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양의 방안이 제안·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분리하는 데 있어 아동보호 차원에서 피해아동을 격리시키는 게 일반적이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는 피해아동이 아닌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 및 격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대 가해자가 부모나 보호자일 경우 거의 모든 학대피해아동이 자신의 집으로부터 분리보호 되는 현행 보호체계가 아동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가해부모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확인하여 아동학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제안하는 게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분리조치에 관여하고 있는 사법 분야 및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분리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학대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 가해자 분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FGI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FGI를 활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연구 기간, 비용 등 연구조건 현실과 그동안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던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FGI가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FGI를 위한 연구 참여자는 인터뷰 주제에 대하여 풍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서로 의견을 말하는 데 있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해당 주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동질성을 확보한 사람들이어야 한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유념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적 표집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아동복지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집단으로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과 사법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집단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가정법원 판사 및 검사, 변호사를 총 8명 섭외하였다. 아동복지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4명을 한 집단, 사법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4명을 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Table 1. Study participants

Spec.	Respondents	
Child welfare	A1	General affairs of the Child Abuse Prevention Headquarters
	A2	00 Female Youth Violent Crime Investigation Team Police
	A3	social welfare professor
	A4	00 district office child abuse official
Justice	B1	00 Family Court Chief Judge (2 years of experience in child protection cases)
	B2	00 District Prosecutor's Office (exclusive of child abuse for 7 to 8 years)
	B3	law professor
	B4	lawyer at a law firm

## 2.2 조사 내용

FGI에 사용될 질문지를 구성하기 위해, 피학대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분리조치 관련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국내외 문헌연구 등을 고찰하여, 내부 연구진이 총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최종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질문지는 현행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는 제도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아동이 아닌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 및 격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질문 내용으로 크게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분리제도, 아동학대행위자 임시조치, 아동학대행위자의 즉각 체포·격리 조치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3 연구 절차

일반적으로 FGI 조사는 연구 내용을 개념화하고 질문을 개발하는 연구 계획 단계, 참여자 모집 단계, FGI 진행 단계, 분석 단계, 보고서 작성 단계로 이루어진다[9].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6 단계를 거쳤다.

Table 2. FGI Process

Phase	Detail
1	Writing Questionnaire
2	Distributing Questionnaire
3	Setting Before Interview
4	Interviewing
5	Transcribing & Reviewing
6	Coding

FGI의 질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피학대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분리조치 관련문헌[3,4,6,7,9-11]을 바탕으로 면대면 인터뷰 질문지 초고를 작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진과 아동복지 전공 교수 1명, 법학 전공 교수 1명의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 후 최종 완성하였다. 인터뷰 전 질문지 배포를 위해 FGI 문항을 연구 참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질문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안내하였다. 본 연구에서 FGI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연구자가 사회를 맡아 인터뷰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또한 사전에 배포된 질문지의 순서대로 하위 목적에 맞게 배경을 인지시켰으며, 인터뷰 중간에 내용을 요약하고 확인하였다. 인터뷰는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집단, 사법 분야 전문가 집단을 각 1회씩 2시간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2022년 6월 9일~10일에 온라인 인터뷰를 시행하고 이를 녹화하였다. 이후 수차례 녹음 파일을 들으며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코딩 절차 중 동일한 의견과 이견을 분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연구진 3명은 인터뷰 내용을 검토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방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 2.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인터뷰를 바탕으로 수행한 질적 연구로 전사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녹음된 모든 내용을 녹취록으로 전사하였으며, 발언자의 발언 그대로를 기술하였다. 전사지는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자가 재검토하였다.

Krippendorff[13]가 제안한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내용분석 절차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텍스트 전체를 심층 이해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유의미한 진술 찾기 단계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기술을 문장 다발로 다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문장 중에서 연구 주제에 유의미한 진술문들을 발췌하여 그 의미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 명명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범주화 단계로 연구 자료의 의미를 개념화한 후

이러한 개념 중에서 유사하거나 상호관계에 처해있거나 공통적인 것들을 재결집하여 범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과정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Lincon와 Guba[14]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신뢰성 및 진실성 점검 요소 중 연구자 삼각검증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자 삼각검증법의 활용 및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학문 영역이 다른 아동복지학, 법학, 상담학을 전공한 연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한 분야의 전문가의 분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편중이나 편견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연구 진행상의 오류 및 해석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구 주제에 대해 폭넓은 이해가 가능한 전문가 1인의 점검을 받아 연구의 신뢰성을 향상되도록 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 간의 분리 필요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간의 분리 필요 관련하여서는 ‘아동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행위자-피해아동 분리 필요’,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분리보호 우선 고려’를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아동 안전을 위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간의 분리가 필요하고,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흥분, 화 등을 진정하기 위해 초기단계의 학대행위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학대행위자의 학대행위에 대한 인식 및 자기통제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경우 지속·반복적인 학대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심각한 학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대행위자의 분리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피해아동이 분리 보호된 경우에는 피해아동에게 2차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학대행위자의 분리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흥분이나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건 발생 초기단계에서 행위자에 대한 교육과 치료적 개입을 위해 아동학대행위자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동일한 장소에서 거주하는 경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동인 피해자로서는 이에 즉각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앙심을 품고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분리는 재범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B2)

“행위자의 학대행위가 심각하거나 현저할 경우, 피해아동이 더 이상 학대행위로부터 노출 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피해아동을 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A4)

“행위자가 즉각적인 흥분이나 화로 인하여 사건에 이르게 된 경우, 즉각적인 행위자의 분리조치는 이러한 행위자를 진정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보입니다. 또한 행위자의 배우자 등 다른 양육자가 피해아동 등을 잘 양육할 수 있다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서 ‘분리조치’는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B2)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분리보호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 이유는 아동의 생활환경, 교육 환경 등의 변경은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학대행위자를 분리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른 곳으로 아이가 가게 될 때, 그 시설이 주거지와 가까이 없는 경우도 흔하고요.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면 전학의 문제가 있고 그럼 친구들과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 아이의 모든 일상이 변경되고 그것이 가져오는 아이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여태까지 손쉽게 간과한 게 아닌가 싶고요. 원가정과의 관계에서도 .....아동의 입장에서는 가해 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다른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도 단절보다는 유지되는 것이 너무 좋은 거겠죠.”(B3)

#### 3.2 피해아동 분리조치 과정에서 문제점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는 2020년 3월, 2021년 1월에 개정되었다.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격리 조치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음을 명시(제12조제8항 신설)하였고,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 학대범죄의 주요 참고인이자 잠재적인 피해자로 보일 경우 이 들로부터 학대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제12조), 긴급임시조치(제13조), 임시조치(제14조, 제19

조, 제21조, 제22조), 임시 후견인(제23조)제도에 따른 보호대상을 ‘피해아동’에서 ‘피해아동 등(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동거하는 아동)’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제12조는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할 시에 피해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아동 등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3조 조치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장 대응인력의 전문성, 업무매뉴얼의 모호한 판단 기준, 추가되는 행정절차, 책임문제, 조치 이후 대비책의 미비, 명령 불이행에 대한 강제력 없는 처벌, 다른 가족구성원의 의해 명령취소 등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 3.2.1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결정권을 나한테”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시의성, 현실여건으로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으로만 분리를 판단하는 실정이므로 현장 대응 인력의 분리 판단에 부담감이 있으며, 현장 대응 인력이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우선,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너무 경미한 사건, 너무 중대한 사건에 대한 판단은 고민이 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경계선상에 있어 판정이 필요한 경우 타기관과 협력하여 사례회의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의성, 지자체 여건 등으로 인해 현장 대응 인력인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장대응 인력의 경우, 아이와 가족을 분리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하였다.

“...사례회의 말씀하셨는데요. 실무에서 의미없습니다. 실무상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움 받을 데가 없습니다. 결국 자의적인 판단이고 경험에 의해서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인력풀은 없습니다. ...(중략) ... 현장에서는요. 분리나 입건할지 안 할지, 사건으로 할지 안 할지의 판단은 거의 전적으로 경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A2)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둘만의 판단으로 아이한테 과연 이 분리가.... 이 친구의 장래에 대해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항상 저는 그걸 할 때마다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중략) 제가 수사만 30년을 해오다 보니까 오

만 범죄자를 다 만나고 형사, 교통..안 해 본 부서가 없는데요. 이 업무가 가장 힘들습니다. 이 업무가, 특히 아동을 하는 게 정말 힘들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결정권을 나한테 줬느냐..'”(A2)

응급조치, 긴급입시조치의 경우, 아동학대 현장대응 인력이 현장에서 그 즉시 판단해야 하다. 긴급입시조치의 경우는 특히나 사법경찰 직권 하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긴급입시조치는 사법경찰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된다.

“긴급입시조치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상에서는 경찰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아마 성인에 대한 것이고 그 이후에 보호라든가, 분리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선 현장을 장악하실 때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동학대 사건은 긴급 입시조치의 통계를 찾아보시면 활용률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현장에서 활용을 안 하는 이유가 격리 같은 것들을 응급조치 72시간 이후에 입시 조치로 가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 활용을 해버리면 아이 분리가 같이 따라오는데, 기관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경찰도 부담스러워서 함부로 활용을 잘 못하세요.”(B4)

또한, 아동학대 사건을 판단하는 아동학대 업무매뉴얼에서도 명확한 세부 지침이 없기 때문에 현장 대응 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현장인력체계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었는데 이 인력도 2년마다 변경되는 실정이고, 사법경찰도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업무를 함께하다보니 전문성을 갖추기는 버겁다고 하였다.

“아동복지법상에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행위 내용 자체가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위에 따라서 행위 유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너무 모호하니까요. 현장에서 그 즉시 판단한다는 게.... 아이를 분리하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거든요. 실제로는 무너지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개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둘만의 판단으로 아이한테 과연 이 분리가.. 이 친구의 장래에 대해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항상 저는 그걸 할 때마다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A2)

“저희가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 아까 경위님께서 명이 하나일 때는 분리해야 되냐, 세 개면 분리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다 예시로 들을 수 없고 지침에 답을 수 없거든요. ....맥락이 중요하고, 행위자의 일회성인지 지속

적인건지 또는 성향인지 아니면 아동과의 관계에서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의 체계가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대응 체계라서 훨씬 더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A1)

### 3.2.2 “어떻게, 어디다 격리를 시키죠?”

아동학대행위자를 격리조치 하는데 대비책이 미비하고, 피해아동을 분리 보호하는 것이 수월하여 먼저 고려하는 상황이며, 학대행위자가 가정의 경제력을 책임지다 보니, 학대행위자를 격리 조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응급 조치, 긴급임시조치 중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조치에 따른 어떠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학대행위자보다 피해아동보호를 위해 격리시킨다고 하였다. 법적으로 아동 격리를 먼저 고려하지는 않지만, 학대행위자를 격리하기보다 피해아동을 격리하는 이유는 그간 피해아동 분리보호가 수월하고 아동의 시설보다 행위자 시설이 훨씬 없고 행위자에 조치에 대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어디다 격리를 시키죠? '어떻게 격리를 시켜라'라는 공식이 없어요. 결국 할 수 있는 건 '심각하다' 하면 '보호시설 인도' 이거 밖에 실무상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행위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했는데, 격리만 해놓고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A2)

### 3.2.3 “사실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분리 하는데 있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로 분리조치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사법계 관련자들은 대부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아동 분리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결정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하였다.

“지금의 상황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법조계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동을 처분하기가 쉬우니까요. 아동은 목소리도 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손쉽게 해왔던 건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고 다른 방법이 있다.' 라는 걸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거죠.”(B3)

“...아이 분리했잖아. 그 사람 지금 유치장에 넣으면 뭐 할 거야. 필요 없잖아. 아이를 분리하고 안전한 데 두면,

그 사람은 나중에 재판받아서 우리가 처벌할게.’ 라고 이런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A2)

### 3.2.4 비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스톱홀름 증후군

현장에서는 학대행위자가 접근금지 명령일지라도, 피해아동의 다른 양육자에게 연락하여 몰래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아동보호차원에서 아동을 분리한다고 하였다.

“(퇴거 및 격리 조치결정) 그 분들이 불과 며칠 안 돼서 다시 돌아와서 사과를 하고 사정을 해요. 집에 잠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제 화해했다고요. 그러면 가족이기 때문에 피해아동과 다른 보호자는 사실 거의 동의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임시 조치가 취소되고요. 일시적인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B1)

피해아동이 자기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지 않고, 학대행위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안전하게 느끼게 되어 대응인력이 안전이 위협되어 분리조치를 하였음에도 아동 스스로 시설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일단 분리 조치를 했습니다. 두 부부가 특히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분리조치를 했는데 아이들이 시설에 갔다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판사님의 결정문까지 났는데, 게다가 보호 명령까지 났는데, 아이들이 어쨌든 심리 지배 상태라고 요즘말로, 가스라이팅으로 아이들이 자기는 학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그리워서 집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명령을 취소하고...” (A2)

### 3.3 학대행위자의 분리(격리) 방안으로 ‘즉각 체포 및 격리 조치’

아동학대 사건 자체를 구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혐의가 있는지 밝혀지기 전 단계에서 기존의 긴급체포보다 조금 더 완화된 체포의 수단 도입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기대응에 있어 학대행위자를 피해자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은 재범 위험이 있기 때문에 72시간 정도 아동학대 행위자가 지인, 친척집 등에 가도록 제도화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짜우면 일단 떼어놓는 것처럼 가해자를 우선적으로. 가족이나 친인척 집에 또는 집과 같은, 안전하고 위해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본인이 범법자라는 인식이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지금 현재도 72시간까지 분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략) ..문제 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기관과 기회로서 우선적으로 가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분리 조치를 안전한 공간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A3)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사례처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초기 조사 기간 동안, 학대행위자를 분리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현장대응인력들이 아동학대 행위, 심각성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학대행위자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면 반갑게 여겼다.

“어떤 법적인 절차를 해서, 만약에 아무리 경미한 체벌이라도 체벌하게 되면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략)... '내가 애가 잘못했으니까 때렸으니까 나는 잘못된 게 없다' 라는 이런 관점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처벌보다는, 만약 아이를 때리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저는 오히려 그게 처벌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심리적 강제를 가해줘서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A2)

반면, 체포는 현재 형사법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즉각체포 제도가 도입하면 행정절차, 학대행위자에 대한 혐의가 명백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체포는 우리나라 정서상 쉽지 않기도 하며, 실제 다른 사건에서도 인신보호로 인해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체포 및 격리하는 것은 아동의 이익보다는 행정에서 편의성을 고려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하였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위험하냐면 우선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분께는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제도일수는 있지만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는데, 아동의 이익보다 행정에서의 편의성이 우선적인, 그런 구조가 되어서 현실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될 것이고 굉장히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A3)

### 3.4 학대행위자 분리(격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누군가를 분리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 상황에서 가해자 분리를 최선으로 하고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그 다음으로 피

해아동과 가족 지원 방식에 대해 지자체 보호팀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 영국에서는 2004년 아동법 개정에 따라 「Working Together」[15]을 개정하면서 아동의 안전보장을 위한 지역 내 핵심 기관(agencies)들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그 핵심 기관에는 보호 파트너(Safeguarding Partner)로서 지방정부, 경찰, 임상위탁그룹(clinical commissioning groups, CCG) 등이 다차원적 측면에서 협력하여 아동에게 통합적인 개입하고 있다.

“누구를 분리하는 것이 그 아동에게 최선인가 이런 판단 상황에서 가해자 분리가 최선이고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이 되면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한 보호는 복지적인 개입으로 지자체의 보호팀과 연계를 해서 작동이 되게 해야 되는 거겠죠.”(B3)

#### 3.4.1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의 학대행위자 분리조건 요건 개발

현장대응인력인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은 아동학대 사건 현장조사에서 학대행위자를 분리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사항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실무자 입장에서는 체포 및 격리 요건에 대해 현장 실무자의 목소리를 듣고 개발한다면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체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도 못 내주겠다고 하면.. (중략) ...예를 들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는 체포가 가능하고 몇 시간 이내에 유치가 가능하다는 걸 만들어 놓으면 실무상에서도 아동을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자 분들 의견도 중요하겠으나 현장 실무자들에게 요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요. ...(중략)...한 번 거기서 실무자들 열 몇 명 모아놓고 '어떠한 요건을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도로교통법도 그렇게 수많은 개정이 되어도요, 제가 교통 관리만 10년을 넘게 했는데 실무에서 어떤 요건을 만들면 의외로 쉽습니다. 실무자들에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즉각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면 오히려 더 쉬운 문제고요. 책상에 앉아서 알 수 없는 문제들이고 현장에 뛰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A2)

응급조치, 긴급조치의 '격리'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격리'에 대한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이라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면, 현장에서 학대행위자 분리조치를 적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응급조치에 보면 '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지'는 '하지 마세요' 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가보면 폭행이나 학대는 대부분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격리'가 있죠. 이 '격리'라는 말이 참 웃깁니다. 어디다 격리를 시키죠? '어떻게 격리를 시켜라'라는 공식이 없어요. 결국 할 수 있는 건 '심각하다' 하면 '보호시설 인도' 이거 밖에 실무상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행위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했는데, 격리만 해놓고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72시간 동안은 집에 무조건 못 오게 한다 그 동안 만약 접근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좋은데 아무도 그런 규정이 없어요."(A2)

학대행위자 분리조치가 후, 대안으로 현재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제1항에 명시한 보호처분에는 있는 감호위탁이 규정이 응급조치, 긴급입시조치, 입시조치에서도 근거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학대행위자를 변화시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추가적으로 응급조치, 긴급입시조치 후 입시조치가 결정까지, 학대행위자를 '보호관찰소'에 머물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금 보호 처분에만 있고 긴급입시조치나 입시조치에서는 감호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입시 조치의 보호 처분에 있는 감호위탁 처분을 .... 추가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면 좋겠다 "(B3)

"치료위탁에 대해서는 입시 조치가 있지만 감호위탁 부분은 입시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앞당겨서 감호위탁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초기 단계로 앞당겨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B1)

### 3.4.2 아동학대행위자 분리조치가 가능한 양육지원 서비스 강화

아동학대처벌법의 초반의 취지는 학대행위자를 분리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지만, 실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초반의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

였다. 지금이라도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에 맞게 학대행위자를 분리조치하기 위해 대체 양육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아동중심적인 환경을 구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피해아동 중심으로 해서, 만약 아이가 가정에서 있어야 하는데 행위자가 분리되어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 아이를 보호하도록 다른 보조 양육자나 다른 사람들이 같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고 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찾아본다든가 하면 좋겠어요. 계속 아이가 분리가 되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애초에 이런 노력들이 배제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위자를 분리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고 이게 맞는 과정이 있으면 해보고, 만약에 여러 가지 자원이 더 연계가 되어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더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B4)

"가폭(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접근 금지를 넣어놓으면 그래도 지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다른 보호자가 보호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접근 금지만 해놔도 이것을 지키지 않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호력을 담보할 수만 있다면 꼭 어디에 이 사람을 수용하지 않아도 격리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누군가가 보호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안 장치가 된다면..."(B4)

### 3.4.3 아동학대사건을 바라보는 인식 전환 필요

아동학대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분리에 있어 행위자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고민 없이 손쉬운 방법으로 아동에 대한 분리조치를 결정하였다. 법집행자들에게 아동학대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들 역시도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가정에서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법집행자들) 기본적으로는 인식 전환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 얘기 들으면 다들 '그러네' 하고 놀라워하시잖아요. '그러게 우리가 왜 피해아동을 그냥 분리하는 것만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금방 쫓아올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아동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기본이 아닐까 싶고요. 그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갖지 못했던 것 같다."(B3)

“지금도 아동학대를 범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누가 왜 너희들이.... 물론 많이 인식이 변화가 됐죠. 정인이 사건이라고 이런 사건 때문에 많은 인식의 변화가 됐지만 (중략) 어떤 법적인 절차를 해서, 만약에 아무리 경미한 처벌이라도 체벌하게 되면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A2)

#### 4. 결론

아동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관련자 간 이견이 없다. 그런데, 오랫동안 ‘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한다’는 것은 피해아동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분리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졌고, 원가정 보호가 어려울 경우에 가해자가 아닌 피해대 아동의 분리가 중심이 된 아동보호 체계가 작동되었다. 아동을 학대 상황으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은 가해자 분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아동을 원가족과 익숙한 생활환경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아동에게 두 번째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낮았다.

분리조치에서 가해자와 피해아동 중 누구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준거에 따라 분리 대상을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동안 깊이 논의하고 고민하지 않았다. 어쩌면 가해자인 어른을 분리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예견되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이 한 순간이라도 위협받아서 안 된다는 보호중심의 아동복지적 관점에 대한 과몰입이 아동 분리보호로 이어졌을 수가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대응체계는 다양한 배경에서 학대행위자를 격리시키기보다 피해아동을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해 왔고,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소극적 조치로 일관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가해부모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확인하여 아동학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아동복지 분야 및 사법 분야 학계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잠재적 학대 및 재학대 발생을 예방, 피해아동 보호차원에서 분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아동의 일상생활의 변경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학대행위자를 우선 분리조치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FGI분석 결과,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간의 분리 필요’, ‘분리

조치 과정에서 문제점’,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및 격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등으로 대주제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간의 분리 필요 관련하여서는 ‘아동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행위자-피해아동 분리 필요’,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분리보호 우선 고려’를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분리조치 과정에서 문제점과 관련하여, ‘현장대응 인력의 뒷’, ‘아동학대행위자 격리조치에 따른 대비책 미비’, ‘비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스톱홀름 증후군’, ‘응급조치 및 긴급입시조치의 처벌 규정’, ‘아동학대 관련 법집행관의 인식: 사실 그게 뭐가 문제냐’의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선진국 사례처럼 아동학대행위자의 ‘즉각 체포 및 격리 조치’ 도입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체포 및 격리조치 도입 찬성-반대’, 마지막으로 학대행위자 분리 및 격리조치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에 관하여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아동학대행위자 분리조치 요건 개발’, ‘양육지원 서비스 강화’, ‘아동학대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전환’을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FGI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행위자 분리조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아동학대행위자 우선 분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응급조치를 통한 아동안전의 보장과 관련해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행위자를 아동과 아동의 원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10]. 아동을 원가족과 익숙한 생활환경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아동에게 두 번째 학대될 수 있다는 인식이 낮고 가해자 분리와 관련한 취약한 아동보호대응체계에서 가해자 분리를 어렵게 하는 법과 제도적 한계가 있다. 분리조치에서 가해자와 피해아동 중 누구를 분리 대상을 결정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그동안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 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는 아동이 비학대보호자 부 또는 모 그리고 형제자매 등 원가족과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연구에서 피해아동이 속했던 친숙한 가정으로부터 그를 분리시키는 것은 아동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느끼도록 하거나 벌을 주는 것이 된다[16]. 학대행위자를 아동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피해아동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권장될 수 있다[3]. 그러므로 학대행위자 분리에 대한 아동학대 대응인력 및 사법체계 구성원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아동 당사자를 비롯하여 전 국민 인식개선을 통해서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보호조치에 앞서 아동

학대 가해자의 분리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 가해자 분리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더 이상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분리로 인해 2차 학대의 경험을 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요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경찰은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아동에 대한 분리조치를 결정할 때 '내가 무슨 권리로 분리조치를 결정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현행 아동보호 서비스 절차가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보호가 좀 더 수월하게 되어 있고,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가정의 경제나, 다른 자녀에 대한 보호 등을 고려해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어쩌면 행정편의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보호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아동이 이미 시설 등으로 분리되어있는 상황에서 주거지 퇴거와 같은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격리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아동이 생활하는 시설의 접근금지 조치를 선호하게 된다고도 하였다. 사법경찰관은 분리보호조치의 타이밍과 업무 부담이 커서 아동분리가 우선되는 기존의 업무경향을 따르게 되어 가해자 분리 방식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현장조사자는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격리 등 법조항 적용의 상이함을 해소할 수 있는 상세한 지침을 필요로 하였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등의 의견이 반영된 가해자 분리요건이 개발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동의 연령, 아동의 발달 정도 및 정서적 안정성, 아동학대의 신고 이력, 아동학대 유형, 기간의 장기성, 아동학대의 정도, 아동 손상의 정도, 피의자의 전력, 아동학대 재범 여부, 다른 양육자 또는 가족의 태도, 가정 내 양육자원 등의 가해자 분리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이다. 특히 가해자 분리 요건중 가해자 요건은 학대가 진행 중인 경우, 학대 의심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심자가 폭력적일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아동을 비난하거나 아동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가해자의 특성 중 알코올 중독, 정신 질환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조치 등 법적 조치를 위한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가해자 분리요건의 활용과 평가 방식, 그리고 최종결정 과정 등이 세밀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가해자 분리 결정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자신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해보호자나 현장조사자가 상호 의견을 청취하여 아동학대 행위자의 분

리조치를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아동학대 행위자 분리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위자에게 퇴거 등을 명한 상황이라면 이후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임시조치 이후 본안 사건의 진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사이의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가해자 격리조치 이후 원가정의 양육 기능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관련 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강화와 감호위탁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임시조치임시조치 결정은 검사의 개입, 판사의 결정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법 집행관 입장에서는 앞서 현장대응 인력들이 학대행위자를 분리조치하지 않고 피해아동 분리보호 된 상황에서 조치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에 부담감이 있었다. 또한, 피해아동이 분리보호조치가 되어 아동이 안전한 상황에 있는데, 굳이 학대행위자를 분리 조치하여 판사가 학대행위자 교육, 교화를 위한 업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청구한 내용을 토대로 그냥 진행하는 상황이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아동 보호시설은 학대행위자 시설보다 많기 때문에 아동에게 최선이 되는 방법을 결정하기 보다는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피해아동 분리보호는 최소한 것으로 하고 학대행위자 분리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분리조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 명시된 '격리'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가 응급조치, 긴급조치, 임시조치에서도 '감호위탁' 시설에 보내질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학대행위자 분리조치 이후 원가정 양육기능 지원이 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가해자 격리이후 피해아동에 대한 원가정 양육지원이 상당히 취약하다[11,12]. 가해자 격리 조치 이후 양육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법과 정책, 서비스의 부재로 피해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행위자가 가정에서 분리되어도 가정에서 아동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적 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 차원이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해자 분리 이후 각 가정이 직면할 다양한 양육요구에 부응하는 아동보호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각 가정의 피

해아동에 대한 식사, 청소, 씻김, 등교, 교육 등 양육을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제도적으로 각 가정에 대해 양육기능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 또는 비가해 부모가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대리보호자가 배치될 수 있는 전문 인력풀 양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경우 학대행위자 부재 시에도 경제적 원조가 지속될 수 있는 강제조치 또는 정부 긴급지원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가정양육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타(상담, 서비스 지원)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S. K. Sin, "Problems of Child Abuse-Related Legal System and Their Reform Measures: Focusing on relevant laws and redistribution of tasks", *Public Interest and Rights*, Vol.21, No.0, pp.285-328, 2021.
- [2] Ministry of Justice. Our efforts to protect children from abuse. Korea Policy Briefing, 2022 [cited 2022 Feb. 2], Available From: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519&callFrom=rsslink> (accessed Mar. 10, 2022)
- [3] J. H. Cho, H. L. Kang, "A study on the ways of improvement in investigation process about child abuse and system of child protection", *Human Right and Justice*, Vol., No.502. pp.112-128, 2021. DOI: <http://doi.org/10.22999/hrj.502.202112.006>
- [4] M. R. Brown, "Rescuing children from abusive parents: The constitutional value of pre-deprivation process", *Ohio State Law Journal*, Vol.65, No.4, pp. 913-989, 2004. <http://hdl.handle.net/1811/70973>
- [5] H. W. Chun, C. W. Jeong, H. K. Kim, J. S. Yoo, B. W. Park, H. O. Kim, Warrantless Police Entrance into the Private Premises,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orea, pp.189-195.
- [6] S. Nicole, "Ending Family Trauma Without Compensation: Drafting § 1983 Complaints for Victims of Wrongful Child Abuse Investigations", *Oregon Law Review*, Vol.90, No.5, pp.1424-1448, 2012. <http://hdl.handle.net/1794/12294>
- [7] M. Steinverg, "Free exercise of religion: The conflict between a parent's rights and a minor child's right in determining the religion of the child", *University of Louisville Journal of Family Law*, Vol.34, No.1, pp.219-238, 1995.
- [8] R. A. Krueger,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5th ed.), p.78-100,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4, pp.77-102.
- [9] H. J. Park, Y. Y. Kim. "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Play & Education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 10, No.4. pp.165-173, 2019. DOI: <http://doi.org/10.15207/JKCS.2019.10.4.165>
- [10] S. Y. Lee, H. S. H. W. Chun, C. W. Jeong, H. K. Kim, J. S. Yoo, B. W. Park, H. O. Kim, A Study on the Plan for Strengthening Early Response to Child Abus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orea, pp.328-333. Available From: [https://www.nkis.re.kr:4445/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9758&otpSeq=0&popup=P](https://www.nkis.re.kr:4445/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9758&otpSeq=0&popup=P)
- [11] S. C. Kim, H. L. Chang, " A Study Evaluating a Program for the Interaction between Children in Institutional Care and their Original Famil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7. pp.91-96, 2017. DOI: <http://doi.org/10.14400/JDC.2017.15.7.91>
- [12] S. K. Yoo, H. L. Jung, J. H. Seonwoo,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Assessment Tools to Help Reunite Children Victims of Abuse and Their Families, Goodneighbors, Korea, pp.3-4.
- [13] K. Krippendorff,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nd ed.), p.35,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03, pp.18-39.
- [14] Y. S. Lincoln, E. G. Guba, *Naturalistic inquiry*, p.331,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85, pp.289-331. DOI: [http://dx.doi.org/10.1016/0147-1767\(85\)90062-8](http://dx.doi.org/10.1016/0147-1767(85)90062-8)
- [15] Department for Education.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UK, pp.75-82.
- [16] T. L. Hafemeister, "Castles made of sand? Rediscovering child abuse and society's response", *Ohio Northern University Law Review*, Vol.36, No.3, pp.819-913, 2010.

황 옥 경(Ock-Kyeong Hwang) [정회원]



- 1997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문학박사)
- 2000년 8월 : 영국 Dundee Univ. Dept. of Social Work. M.Phil 이수
- 2001년 9월 ~ 현재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권리, 보육, 아동복지

송 미 령(Mi Ryoung Song)

[정회원]



- 2017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문학박사)
- 2022년 4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연구 교수

〈관심분야〉

교육평가, 아동복지